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108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27.

판결 선고2024. 11. 28.

주 문

1. 대구 군위군 C 임야 21,421㎡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3. 4. 2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23. 4. 27. 접수 제5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공병훈

별지